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 - 30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한국교통자산운용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㈜한국교통자산운용에 과징금 653백만원을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,

○ ㈜한국교통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20XX.XX.XX.~20XX.XX.XX., 20XX.XX.XX.~20XX.XX.XX.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약 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

⑴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㈜한국교통자산운용(이하 '한국교통')은 대주주 ㈜A에 O회에 걸쳐 총 O원을 대여

⑵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대주주 ㈜A의 특수관계인인 ㈜B에 총 O원을 대여

⑶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대주주 ㈜A의 특수관계인인 C에 O회에 걸쳐 총 O원을 대여

4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34조(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) 제2항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8조(신용공여의 범위 등) 제1항 제4호, 「지배구조법」 제3조(특수관계인의 범위) 제1항 제2호